



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으로 경쟁력 강화한다!

대기업에 비해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
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을 통한 명품 브랜드 육성

공동상표 개발 지원

가. 사업내용

-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운영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에서 상표개발비 지원

나. 신청자격

- 공동상표를 도입·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대표자 (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참조)
 - ①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 - ②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
 - ③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
 -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·골프장·스키장·도박장·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은 제외

다. 지원내용

- 공동상표 개발 소요 비용의 70% 지원(상표당 50백만원 한도)

라. 신청기간

- 신청기간 : 2010년 1월 20일(수) ~ 2월 18일(목)

마. 지원결정

- 공동브랜드 조직 운영역량, 공동브랜드 경쟁력 및 마케팅역량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(요건심사, 현지실태조사, 선정심사위원회 개최)

공동상표 홍보 지원

가. 사업내용

- 중소기업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, 신문,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

나. 신청자격

-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(연계생산지원) 및 시행령 제25조(공동상표지원기준)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
 - ※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·사용하는 공동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
 - ※ 공고일 현재 정부 홍보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

다. 지원내용

- 공동상표 홍보 소요 비용의 70% 지원 (예산, 지원수요 및 광고매체를 감안하여 지원금 결정)

라. 신청기간

- 신청기간 : 2010년 1월 20일(수) ~ 2월 18일(목)

마. 지원결정

- 공동상표의 운영현황에 대한 Presentation 실시
- 품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결정



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

-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
 - 주소 : (158-721)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79 중소기업유통센터 14층 전시홍보팀
 - Tel : 02-6678-9341/9343, Fax : 02-6678-9690